

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

이의신청 공동농업 경영체	공동농업경영체명		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	
이의신청 내용	처분내용	통지서 (공고문) 번호	통지(공고) 일자	
		처분결과 및 사유		
	이의신청 의견			
심사결정	결 정	(수용, 기각)		
	사 유			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또는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